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19. 12. 2.

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

**1. 제 출 자:** 성동구청장

### 2. 제안이유

법제처 및 교육부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가. 평생교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3항에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학습자 안전조치 조문 삭제(안 제13조)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9. 10. 4. ~ 2019. 10. 2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 안전 조치에 관하여 명시한 안 제13조 규정이 상위법인 「평생교육법」에 벗어난 조문에 해당되어 삭제코자 하는 것임
- 안 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그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·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
-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3항에서는, 같은법 제2조제2호가목1)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, 평생학습관은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아닌 바
- 안 제13조의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학습자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므로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타당한 안으로 여겨짐

1)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 “평생교육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  
가. 이 법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·법인 또는 단체